질권설정 승낙의뢰서

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질권설정용)

㈜우리은행

(부)지점 귀중

귀행에 개설된 아래 예금에 대하여 귀행의 질권설정 승낙을 신청하오니 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 금 명 세

예 금 주	예금종류	계 좌 번 호	금 액(계약액)	만 기 일	질권금액	Ы	고
-	7/17/9/16	1005-104-185587			H66, 558, 5+6		
		7 ₆ 7					
		* A.					

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:

262 년 6 월 30일

질권설정자

주식회사 케이원제15호판교 위뽝관리부동산투자회사 (예 금서줄)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7(역삼동) 대표이사 도 병

본인확인 인감대조

권 자

성120명81-47521

지 유특별자치도 계루시 참단로 242(영광동)



본인확인 인감대조

)





위 예금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질권설정을 승낙합니다. (승낙조건:

질권설정자(예금주): 주식회사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계좌번호: 1005-704-185587 신계좌: 1005-704-185587

설정금액:

68,558,556 예금잔액:

68,558,556

질권자: (주)카카오

거래사유 :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한 질권설정

㈜ 우리은행

2021 년 대치동지점



2021 .07. 0 1

제

※ 뒷면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질권설정 해지의 통지

이 예금에 설정된 질권의 해지시에는 질권설정자(예금주) 및 질권자가 당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십시오.

질권설정된 예금의 원리금 지급

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로부터 해지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예금주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질권 실행에 의한 지급

질권자가 질권설정승낙의뢰서상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도래 등으로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
- 가) 예금의 만기일이 채권변제기일보다 뒤인 때에는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하며,
- 나) 채권변제기일이 예금의 만기일보다 뒤인 때에는 채권변제기일 이후에 지급합니다.

채권변제금액을 땅탁한 경우 예금의 처리



질권설정자(예금주)에게 다같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다만, 질권자의 청구 및 예금주의 승낙에 따라 그 변제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질권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질권설정을 위한 특약</u>

- 1. 본건 계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, 압류 등 권리주장이 있는 경우, 우리은행은 이 계약에 따른 질권 설정 이후 본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(즉, 장래입금분)의 정당한 귀속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하며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로 인한 책임은 질권 설정자 및 질권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.
- 2. 질권자는 본 질권계약에 따른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은행에 질권 실행 요청을 할 수 있고, 우리은행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양자의 승인 또는 동의가 표시된 요청서를 받고 질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해당 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은행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위 질권실행으로 인한 예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질권설정 승낙의뢰서

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질권설정용)

㈜우리은행

(부)지점 귀중

귀행에 개설된 아래 예금에 대하여 귀행의 질권설정 승낙을 신청하오니 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 금 명 세

예 금 주	예금종류	계 좌 번 호	금 액(계약액)	만 기 일	질권금액	Ы	ュ
	गण्य भेताते	1005-004-190921			to 667, 402, 630		

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:

일

질권설정자

주식회사 케이원제15호판교교 역탁관리부동산투자회樣學 (예 금 중)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7(역삼 ○표이사 도



권 자

1²20-81-47521



(주특별과기도 재주시 침단로 242(영평동)

위 예금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질권설정을 승낙합니다. (승낙조건:

질권설정자(예금주): 주식회사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계좌번호: 1005-004-190927 신계좌: 1005-004-190927

설정금액:

867,402,830 예금잔액:

867,402,830

등 여권자: (주)카카오

서울자태사유 :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한 질권설정

2021 .07. 0 1

㈜ 우리은행

2021 ^년 06 ^월 30 ^일 치돗지점 (부)지점장 대치동지점



※ 뒷면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질권설정 해지의 통지

이 예금에 설정된 질권의 해지시에는 질권설정자(예금주) 및 질권자가 당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십시오.

질권설정된 예금의 원리금 지급

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로부터 해지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예금주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질권 실행에 의한 지급

질권자가 질권설정승낙의뢰서상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도래 등으로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.

- 가) 예금의 만기일이 채권변제기일보다 뒤인 때에는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하며,
- 나) 채권변제기일이 예금의 만기일보다 뒤인 때에는 채권변제기일 이후에 지급합니다.

채권변제금액을 공탁한 경우 예공의 처리



이 예금의 만기일이 채권의 변체기일전에 도래하는 경우 채권변제계일 전에는 그 원리금을 질권자 또는

질권설정자(예금주)에게 다같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다만, 질권자의 청구 및 예금주의 승낙에 따라 그 변제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질권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질권설정을 위한 특약

- 1. 본건 계좌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, 압류 등 권리주장이 있는 경우, 우리은행은 이 계약에 따른 질권 설정 이후 본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(즉, 장래입금분)의 정당한 귀속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하며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로 인한 책임은 질권 설정자 및 질권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.
- 2. 질권자는 본 질권계약에 따른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은행에 질권 실행 요청을 할 수 있고, 우리은행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양자의 승인 또는 동의가 표시된 요청서를 받고 질권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해당 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은행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위 질권실행으로 인한 예금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